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2

발의연월일: 2020. 10. 8.

발 의 자 : 윤영덕 · 인재근 · 이용빈

기동민・송갑석・강민정

아수진비 · 강은미 · 김승원

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신규채용을 교원의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시·도 교육청에따라 위탁채용 현황이 다름.

또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한편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건비 등을 시·도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경우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3조의2제10항).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0항 중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전형"으로, "공개전형의"를 "위탁전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전형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원의 임용) ① ~ ⑨ (생 략)	원의 임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	10
원의 신규채용은 <u>공개전형에</u>	시·도교육감
<u>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u> 에 있	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
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	<u>전형</u>
한 자격요건과 <u>공개전형의</u> 실	위탁 <u>전</u>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형의
통령령으로 정한다.	